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의안 번호 | 6954 |
|----------|------|

제출연월일 : 2020. 12. 2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제9항 중 “제5항을”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명할 수 있

다”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4조제3항제8호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⑨ (생 략)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 ⑧ (생 략)

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

-----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 | |
|---|--|
| <p>⑩ · ⑪ (생략)</p> <p>제94조(과태료)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7. (생략)</p> <p>8. 제44조제10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p> <p>9. ~ 16. (생략)</p> <p>④ ~ ⑥ (생략)</p> | <p><u>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 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u></p> <p>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p> <p>제9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44조제11항----- ----- ----- -----</p> <p>9. ~ 16.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